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
-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56조
- 경상북도 세정과-3775(2010.3.16)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행정안전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설) ② ~ ④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6. (생략) 7. (신설) ② (생략)	제3조(지급기준)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